



서울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 규정

항공우주공학과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학칙, 서울대학교 학위수여규정,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석·박사 과정 이수에 관한 내규 등의 범위 내에서 항공우주공학과 석·박사과정의 학위 취득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과정이수)

- ① (석사과정) 학칙 제 78조에 의거하여 24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논문 연구과목은 6학점까지만 인정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충족하여야 한다.
 1. 「공학연구윤리 및 논문작성법」 및 「항공우주 연구방법론」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한다. 단, 외국인학생은 항공우주공학과 대학원 전공과목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항공우주공학과 대학원 세미나 과목은 수료학점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수강을 권장한다.
 3. 발사체 시스템 개론 및 현장실무응용과 위성 시스템 개론 및 현장실무응용은 두 과목 모두 수강하여도 수료사정시 3학점만 인정한다.
 4. 협동과정 우주시스템전공 교과목 중 2군교과목은 부제를 달리하여 수강하여도 수료사정 시 한 과목만 인정한다.
 5. 대학원 공통역량교과목은 최대 3학점까지 타학과 교과목으로 인정한다. [신설 2021.12.16.]
- ② (박사과정) 학칙 제 78조에 의거하여 36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충족하여야 한다.
 1. 「공학연구윤리 및 논문작성법」(석사과정에서 기 이수한 경우 인정) 및 「항공우주 연구방법론」(석사과정에서 기 이수한 경우 인정)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한다. 단, 외국인학생은 항공우주공학과 대학원 전공과목으로 대체(석사과정에서 항공우주공학과 대학원 전공과목으로 대체 인정받은 경우도 인정)할 수 있다.
 2. 논문연구, 항공우주공학과 대학원 세미나 과목은 12학점까지 논문연구학점으로 인정한다.
 3. 발사체 시스템 개론 및 현장실무응용과 위성 시스템 개론 및 현장실무응용은 두 과목 모두 수강하여도 수료사정 시 3학점만 인정한다.

4. 협동과정 우주시스템전공 교과목 중 2군교과목은 부제를 달리하여 수강하여도 수료사정 시 한 과목만 인정한다.

5. 대학원 공통역량교과목은 최대 3학점까지 타학과 교과목으로 인정한다.
[신설 2021.12.16.]

③ (석박사통합과정) 학칙 제 78조에 의거하여 60학점(기 이수한 석사과정 이수학점 포함)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충족하여야 한다.

1. 「공학연구윤리 및 논문작성법」 및 「항공우주 연구방법론」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한다. 단, 외국인학생은 항공우주공학과 대학원 전공과목으로 대체 할 수 있다.

2. 논문연구, 항공우주공학과 대학원 세미나 과목은 18학점까지 논문연구학점으로 인정된다.

3. 발사체 시스템 개론 및 현장실무응용과 위성 시스템 개론 및 현장실무응용은 두 과목 모두 수강하여도 수료사정 시 3학점만 인정한다.

4. 협동과정 우주시스템전공 교과목 중 2군교과목은 부제를 달리하여 수강하여도 수료사정 시 한 과목만 인정한다.

5. 대학원 공통역량교과목은 최대 6학점까지 타학과 교과목으로 인정한다.
[신설 2021.12.16.]

제 4조 (전공과목 논문제출 자격시험)

석사 또는 박사학위 취득을 위해서는 학위논문을 제출해야 하며, 학위논문제출 자격시험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 5조 (석사학위 논문심사)

① (심사시기 및 일정) 논문의 심사 및 일정은 서울대학교에서 요구하는 행정절차에 따라 시행하되 논문 심사 7일 전까지 심사용 논문을 학위논문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위논문 제출 허용 기한) 학위논문 제출 허용 기한은 과정수료 후 3년까지를 원칙으로 한다.(병역의무이행 기간은 산입하지 않음.)

③ (발표 및 작성언어) 학위논문 발표 및 작성은 영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6조 (박사학위 논문지도 위원회)

① (목적 및 기능) 박사학위 논문지도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박사과정 논문지도 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계획을 심의하고 연구수행을 지도한다.

②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인 지도교수를 포함한 3인의 교수 또는 학계, 연구계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지도위원을 교체하는 경우에도 구성절차에 준한다.

③ (개최횟수 및 시기) 논문지도 위원회는 박사과정 입학 후 6학기(석박사통합과정은 입학 후 8학기)이내에 구성하여, 해당 학기 중에 논문지도 위원회 회의를 개최 하여야 한다.

④ (심의사항) 학위논문 연구계획의 심사, 학위논문 연구에 관련된 지도, 학위논문 계획변경에 관한 지도와 승인, 향후 초심, 중심 일정 결정 등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심의한다.

⑤ (해산) “논문지도결과보고서”의 접수와 동시에 해산하며, 논문지도위원회 위원은 학위논문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다.

제 7조 (박사학위 논문심사)

① (논문심사 청구자격) 박사학위 논문심사 청구 자격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따른다.

② (심사시기 및 일정) 논문의 심사 및 일정은 서울대학교에서 요구하는 행정절차에 따라 시행하되 논문 심사 7일 전까지 심사용 논문을 학위논문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학위논문 제출 허용 기한) 학위논문 제출 허용 기한은 과정수료 후 5년까지를 원칙으로 한다.(병역의무이행 기간은 산입하지 않음.)

④(발표 및 작성언어) 학위논문 발표 및 작성은 영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초심은 4월 또는 10월 중에, 중심은 6월 또는 12월 중에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8조 (석박사통합과정 중도 포기 및 탈락에 대한 조치)

중도 포기자 및 탈락자 중 석사학위 수여 요건을 갖춘 자에게는 석사학위를 수여하고 통합과정을 종결한다.

항공우주공학과 석사학위 논문제출자격시험 전공시험 규정

제정 2021.03.01.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항공우주공학과 석사학위 논문제출자격시험 전공시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응시자격)

항공우주공학과 석사과정에서 2개 학기 이상 등록한 학생 중 기초시험을 통과하고, 환경안전원의 환경안전교육과 생명존중(자살예방)교육(2016학년도 신입생부터)을 이수한 자에 한해 시험에 응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제 3조 기초시험 (전공시험과 상이)

- ① (시행시기) 2월말, 8월말 실시
- ② (응시자격) 최소 1개 학기 이수 후
- ③ (시험방법) 본인 연구내용과 연관된 학부 및 대학원 교과과정에 대한 서술형 문제
- ④ (합격기준) PASS/FAIL로 판정

제 4조 (과목선택)

항공우주공학과 개설 교과목 중 총 3과목을 선택하며, 과목은 성적이 부여되는 과목으로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5조 (점수 산정)

시험 성적은 선택한 과목에 대한 이수성적으로 산정한다. 이수성적별 점수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A+(100점), A0(90점), A-(80점), B+(70점), B0(60점), B-(50점), C+(40점), C0(30점), C-이하(0점)

제 6조 (합격점수)

60점 이상인 경우 석사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 전공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제 7조 (재응시)

불합격 시 2회에 한하여 재응시 가능하며, 총 3회 이상 불합격 시 지도교수와 학과장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 한해 재응시 할 수 있다.

항공우주공학과 박사학위 논문제출자격시험 전공시험 규정

제정 2021.03.01.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항공우주공학과 박사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 전공시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응시자격)

항공우주공학과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에서 2개 학기 이상 등록하고 환경안전원의 환경안전교육과 생명존중(자살예방)교육(2016학년도 신입생부터)을 이수한 자에 한해 시험에 응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제 3조 (시험일정)

박사과정은 응시자격 요건을 만족시키는 첫 학기에 응시해야 하며, 석박사통합과정은 4개 학기 이내에 최소 한번은 응시해야 한다.

제 4조 (시험)

박사과정 전공과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수준을 평가하는 문제로 출제한다.

제 5조 (합격점수)

70점 이상인 경우 박사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 전공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제 6조 (재응시)

불합격 시 2회에 한하여 재응시 할 수 있으며, 불합격 다음 학기에 재응시 하여야 한다. 3회 재응시 하는 경우는 학과장과 지도교수를 포함한 3인의 교수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논문 주제 발표를 포함한 구술고사를 실시하며, 불합격 시 박사학위 과정을 지속할 수 없다. 단, 석박사통합과정 학생은 항공우주공학과 석박사 학위 취득 규정 제8조에 의거하여 석사학위 수여 요건을 갖추면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항공우주공학과 박사학위 논문심사 청구자격에 관한 규정

제정 2021.03.01.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항공우주공학과 박사학위 논문심사 청구자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자격요건)

항공우주공학과(이하 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예정자가 학위논문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학술지(이하 ‘국제학술지’)에 논문 2편(주저자 1편, 공동저자 1편) 이상 게재하거나 게재예정증명서류를 제출하여 학과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조 (국제학술지의 정의)

국제학술지란 항공우주공학과에서 인정하는 SCI (Science Citation Index) 또는 SCIE (Science Citation Index Expanded)에 등재된 학술지를 의미한다.

제 4조 (유예 조건)

학과 전임교수 1인당 박사학위 취득예정자 1명에 한하여 학과장 허가 하에 제 2조의 조건을 유예 받을 수 있다.

제 5조 (유예 해지)

유예자 박사학위 취득 후 6개 학기 동안 해당 교수 지도학생은 유예 조건을 적용 받지 못한다. 단, 유예자가 졸업 후 제 2조의 자격요건을 만족시키는 경우, 지도교수가 학과장에게 게재(예정)증명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제 2조의 자격조건을 만족시킨 것으로 간주하고, 다시 유예 조건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우수 박사학위 논문상 규정

제정 2021.03.01.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대학원생의 연구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재학 기간 중 연구 업적을 평가하여 우수 박사학위 논문상을 수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행시기)

매년 1월 중 우수 박사학위 논문상 수상을 위한 지원을 공고하고 2월에 평가하여 결정한다.

제3조 (대상)

당해년 박사 학위취득(예정)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 (평가)

인사업적평가위원회는 국제 학술지 논문, 국내 학술지 논문, 학술대회 논문, 산학연구실적, 대학원 성적 등을 평가하여 세부 전공 분야별로 약간 명의 수상자를 결정한다.